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
번호 17414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10.
발 의 자 : 남인순 · 서영교 · 박선숙
 표창원 · 백혜련 · 박 정
 기동민 · 윤일규 · 이원우
 한정애 · 홍익표 · 김해영
 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난임을 ‘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’라고 정의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‘부부’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난임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,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,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1호).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1호 중 “부부가”를 “부부(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“난임(難妊)”이란 <u>부부가</u>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 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	11. -----부부 <u>(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-----</u> ----- ----- -----.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